성주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8년 월 일
발 의 자 : 도정태의원외6인

1. 개정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조문을 반영하고,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권고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며, 자치법규 본문에 법령명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뒤에 낫표를 표시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띄어쓰기
- “성주군의회위원회조례”를 “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”로 함

나. 개정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근거조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(안 제1조)
다. 인용 법령명에 낫표 표시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지방자치법 제56조
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 없음
다. 기 타
1) 개정조례 안 : 붙임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성주군의회위원회조례”를 “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 제5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의원이”를 “의원의 윤리심사 및”으로, “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”를 “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,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.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.

제8조중 “이 조례는”을 “이 조례에”로, “회의규칙”을 “「성주군의회 회의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명 성주군의회위원회조례	**제명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**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**지방자치법 제54조**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**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** ---------- ----------.
제2조(위원회의 설치) ①**(생 략)** ②의회는 **의원이**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**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.** ③~④**(생 략)**	제2조(위원회의 설치) ①**(현행과 같음)** ②-- **의원의 윤리심사 및** ---------- ----------**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,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.** ③~④**(현행과 같음)**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. **<신 설>**	제5조(위원장의 직무) **①**---------- ----------. **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.**
제8조(준용규정) **이 조례는**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·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**회의규칙**을 준용한다.	제8조(준용규정) **이 조례에** ---------- ---------- --- **「성주군의회 회의 규칙」** ----------.